

울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141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1417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19가단1017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지은

변론 종결2022. 1. 13.

판결 선고2022. 2. 15.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19가단1017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주식회사 E 발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80,000주에 관하여 2017. 7. 3.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보통주식 80,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게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여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9줄의 "2016나57918"을 "2016나57819"로 고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D은 적극재산으로 'F'의 재고자산

107,534,052원,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주식 24만 주(1주당 500원) 액면가 합계

12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가 적극재산을 고려하면, D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법리와 갑 제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2,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목들을 D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 ① D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100646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선서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재산목록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자산들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킨 바 없다.
- ② 피고가 'F' 재고자산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는 손익계산서뿐으로 이는 재고자산이 실제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I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27. 주주 서면결의로 해산되어 청산되었으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주식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